

# 「2022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공고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물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2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0. 4.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 공모계획

- 공 모 명 : 2022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 공모기간 : 2022.10.04.(화) ~ 10.21.(금) 3주간
- 참여대상 :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단, 수상기업은 사업화자금에 대하여 협약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공모분야 : 물산업진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분야 사업화기술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watercluster@keco.or.kr)
  - 제출서류 : 체크리스트,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제출형식 : 제공된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자유형식으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http://www.keco.or.kr))

국가물산업클러스터([www.watercluster.or.kr](http://www.watercluster.or.kr)) 홈페이지 공지확인

## 특 전

- 최종 선정기업 사업화자금 최대 20백만원 지원
- 물기업 홍보전시회, 맞춤형컨설팅, 네트워킹 등

## 선정규모

- 1차 심사(서류평가) : 10개팀 내외 선정
  - 서류심사 및 내·외부전문가 평가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기술성, 수익성, 가점
- 2차 심사(발표평가) : 5개팀 (총 지원금 50백만원 )
  -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내·외부전문가 평가
  - 선정기준 : 사업역량, 기술성, 수익성 등
- 시상계획

구분	훈 격 (수량)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환경부장관상(1)	20백만원
최우수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1)	10백만원
우수상	(사)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1)	10백만원
장려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상(2)	각 5백만원

##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 최종 수상기업 5개사
  - 협약기간 : 최초 협약일 ~ 12개월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컨설팅, 시험분석, 인증, 홈페이지 제작 등
- ※ 지원금의 유용 및 타 지원금 중복지원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의 부정이익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동 시행령에 따라 환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 협약서 주요사항 참고

## 서류 및 최종 결과발표 : 2022. 11월 중, 개별 유선연락

## □ 참가 제외 기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 특허검색(www.kipris.or.kr)에서 신청 기술 중복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동일(유사) 기술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최 “2020~2021 물산업 우수기술 창업공모전” 기 수상기업 또는 최근 3년간 타 기관(단체) 주관의 공모전 수상기업
- (수상기업) 사업화자금에 대하여 협약서에 따른 사업수행 불가능 기업
  - \* 공고문 내 협약서 주요내용 확인 필수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가점 세부 항목	점수
○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만 해당) (건당 1점, 다수의 지재권 보유시 최대 2건으로만 인정)	최대2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문의 : 물산업진흥처 워터캠퍼스부 053-601-61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결과보고)** ①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내용의 최종결과를 협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 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2.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당해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 ② 협약 종료 후에도 수행기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수행기업은 붙임의 사업계획서상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협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사항
    - 가. 비목간 20%이상 예산 변경
    - 나. 기타 주요 사업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 가. 대표자, 본점이전(주소변경), 연락처 변경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2022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여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2. 지원금의 유용,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 등 중대한 협약 위반
  3.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4.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업비 반환 및 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사업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발생된 사업비에 대해 수행기업에 통보하고 수행기업은 통보일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 완료후 사업비 미사용 잔액
  2. 제5조제2항1,3,4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 최초 지원금 전액
- ② 제1항에 사유를 제외한 다음의 사유에 따라 발생된 사업비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7호의 부정이익에 해당함으로써 사업단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수행기업에 통보하고 수행기업은 통보일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2호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용된 지원금 전액

**제7조(이의신청)** ① 수행기업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최종결정하여 수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